

36

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신설 (법 §167의6)

① 개정개요

개정 전	개정 후
<신 설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신설</p> <p>○ 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(국세) 분리과세 적용 시 개인지방소득세도 분리과세(세율 1.4% ~3.0%) 적용되도록 과세특례 신설</p> <p>○ (일몰 기한) 2028.12.31.</p>

□ 개정내용

- 고배당기업 배당소득에 대해 소득세 분리과세 적용시 개인지방소득세도 분리과세 적용되도록 과세특례 신설

<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주요 내용(조특법) >

- (적용대상) 전년 대비 현금배당이 감소하지 않은 ① 또는 ② 충족 법인
 ① 배당성향 40% 이상
 ② 배당성향 25% 이상 및 전년 대비 10% 이상 배당 증가
- (적용세율) 4단계 누진세율

구간	세율
2천만원 이하	14%
2천만원 초과 3억원이하	20%
<u>3억원 초과 50억원 이하</u>	<u>25%</u>
<u>50억원 초과</u>	<u>30%</u>

□ 적용요령

- 거주자가 이 법 시행(2026. 1. 1.) 이후 받는 배당소득부터 적용(부칙 §16)